

의안번호	제2585호
의 결	2023. . . .
연 월 일	(제 회)

의결사항	
------	--

고성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허옥희 의원 등 5인
발의연월일	2023. 3. 3.

고성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옥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585
----------	------

발의연월일 : 2023. 3. 3.

발 의 자 : 허옥희, 정영환, 이쌍자
김향숙, 최두임 의원
(5인)

1. 제안이유

현행 조례에서 자문자(군수)와 자문에 응하는 자(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장)가 동일한 문제를 개선하고, 정책 자문에 있어서 군민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성 있어 이를 신설하며, 명확한 내용 전달을 위해 용어 및 표현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근거 명확화 및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변경(안 제2조, 제3조)
- 나. 명확한 내용 전달을 위한 용어 및 표현 정비(안 제5조, 제10조)
- 다. 군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1조의2)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입법예고: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3-6호

- 예고기간: 2023. 3. 3.(금) ~ 2023. 3. 10.(금) [7일간]

- 의견반영 등 조치 내용: 의견 없음

4. 본문: 붙임과 같음

고성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군정의 주요 정책과 현안사항 등에 대하여 자문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고성군”을 “고성군”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기능)”을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성군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로, “조언·권고·건의·제안 등을 할 수 있다”를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로 한다.

- ① 고성군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관한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을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위원회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부위원장은 제9조에 따라 분과별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그 위원장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의 제목 “(위원의 제척)”을 “(위원의 자문 배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척은”을 “위원의 자문 배제는”으로 한다.

제10조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고성군 정책기획 담당부서의 장”으로,
“기획담당”을 “그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의견 청취) ① 위원장은 제2조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보다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와 협의하여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군민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
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승인된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 활동을 포함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
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군정의 주</u> <u>요 정책과 현안사항 등에 대하</u> <u>여 자문하고자 「지방자치법」</u> <u>제130조에 따라 고성군 정책자</u> <u>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u> <u>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u> <u>로 한다.</u></p> <p>제2조(기능) <신 설></p> <p><u>고성군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u> <u>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u> <u>사항에 관하여 <u>조언·권고·건</u></u> <u>의·제안 등을 할 수 있다.</u></p> <p>1. ~ 4. (생 략)</p> <p>제3조(구성) ① <u>위원회는 위원장</u> <u>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u> <u>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성 성</u> <u>의 위원이 위촉직 위원의 100분</u> <u>의 6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u></p>	<p>제1조(목적) ----- <u>고성군</u> ---- ----- ----- ----- ----- ----- -----.</p> <p>제2조(설치 및 기능) ① <u>고성군의</u> <u>주요 정책과 현안에 관한 고성</u> <u>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u> <u>문을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정</u> <u>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u> <u>한다)를 둔다.</u></p> <p>② <u>위원회</u>----- ----- ----- ----- <u>군수</u> <u>의 자문에 응한다.</u></p> <p>1. ~ 4. (현행과 같음)</p> <p>제3조(구성) ① <u>위원회는 30명 이</u> <u>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p>

다.

②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제9조에 따라 설치된 분과별 위원회 위원장 중에서 호선한다.

③ (생략)

제5조(위원의 제척)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에 응할 수 없다. 이 경우 제척은 위원장이 직접 결정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1. 2. (생략)

제10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서기는 기획담당으로 한다.

<신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부위원장은 제9조에 따라 분과별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그 위원장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의 자문 배제) -----

----. ----- 위원의 자문 배제
는 -----
-----.

1. 2. (현행과 같음)

제10조(간사 및 서기) -----

----- 고성군 정책기획
담당부서의 장-- 그 부서의 담
당-----
-----.

제11조의2(의견 청취) ① 위원장은 제2조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보다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와 협의하여 토론회, 세미

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군민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승인된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에 대
하여는 위원회 활동을 포함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